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

유통산업 :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 ·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 배송 ·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매장 :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임시시장 :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상점가 :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전문상가단지 :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무점포판매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홈쇼핑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집배송시설 : 상품의 주문처리 · 재고관리 · 수송 · 보관 · 하역 · 포장 · 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공동집 · 배송센터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체인사업

직영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형태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조합형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에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취소

-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

1. 사업계획서

- 사업의 개요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의 규모(대지면적 · 건축물면적 · 매장면적 · 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업종의 구성
- 운영 ·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m²)
-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

-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기본계획에 포함사항

-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
-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 유통전문 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방안
-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최저임금법의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소정(所定)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액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